

국내대회 운영규정

제 정 : 2010. 10. 1.
개 정 : 2011. 3. 26.
개 정 : 2012. 2. 25.
개 정 : 2013. 3. 27.
개 정 : 2015. 4. 30.
전면개정 : 2017. 2. 24.
전면개정 : 2020. 2.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 1항 5호에 의하여 대한장애인럭비협회(이하 “장애인럭비협회”라 한다)에서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럭비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표기)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표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회 운영위원회

제2조 (설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애인럭비협회에서는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시기) 위원회는 전국대회 개최 이전에 별표-4와 같이 대회 규모에 맞춰 구성하여 장애인럭비협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대회 규모에 따라 장애인럭비협회와 협의 후 조절 가능하다.

- | | |
|------------------------------|-----------|
| 1. 조직위원장 | 1인 |
| 2. 경기기술위원장(TD) | 1인 |
| 3. 심판위원장(Head referee) | 1인 |
| 4. 등급분류 위원장(Head classifier) | 1인 |
| 5. 종목담당관 | 1인 |
| 6. 위 원 | 약간인 |
| 7. 간 사 | 약간인 (사무국) |

- ②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는 장애인력비협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부재 시 장애인력비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전국대회인 경우 제1항의 제1호 및 제5호는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
- ⑤ 제1항의 제1호에 의하여 회장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지목할 수 있다.
- ⑥ 조직위원장은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① 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부서를 두고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 단, 대회규모에 따라 이를 운영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진행한다.

1. 경기운영팀
2. 공식행사팀
3. 의전초청팀
4. 인력물자팀
5. 홍보팀
6. 자원봉사팀
7. 안전관리팀
8. 교통 수송팀
9. 숙소 운영팀
10. 시설지원팀
11. 식사운영팀

②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영팀에 대해서는 장애인력비협회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6조 (해산) 위원회는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임원으로 계속 활동하며 대회 종료 후 장애인력비협회에 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제출 후 이를 해산한다.

제 3 장 대회 참가

제7조 (국내대회)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전국대회 참가 시·도 대표선수 및 팀을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팀을 축소 할 수 있다.

② 전국체전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참가시도의 조절 및 예선전을 실시하여 참가시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제8조 (참가신청) ① 전국대회인 경우 시·도장애인럭비협회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장애인럭비협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전국체전의 경우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장애인체육회에 소정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다.

제9조 (대회참가) ① 전국대회는 대회 참가요강에 따라 시·도팀, 시·도 클럽팀으로 출전 가능하며 전국체전은 각 시·도 단위로 참가하여야 하며 장애인럭비협회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해외선수의 참가는 장애인럭비협회 선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② 전국체전의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거 참가 시·도의 제한이 있을 경우 예선전을 별도로 실시하며, 참가신청 또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참가요강) ① 전국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세부종목별 참가는 장애인럭비협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대회의 참가요강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대회개최 3~6개월 전에 장애인럭비협회에서 결정한다.

③ 장애인럭비협회 경기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을 따른다.

④ 선수 변경 시 인원증감은 불가하며 대체 선수로 가능하다. 단 변경선수의 동의서와 건강관련 내용 증명을 필요로 한다.

⑤ 4항의 변경은 대회전 2주전까지 마무리 하며 그 후로는 변경 할 수 없다.

⑥ 전국체전의 경우 전국체전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경기방법) ① 전국대회의 경기는 참가요강에 의하여 시도대항 혹은 클럽대항전으로 실시한다.

② 전국체전의 경기는 반드시 시도 대항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예선전을 거쳐 참가한다.

제 4 장 경기 종목

제12조 (경기종목) ① 퀴드(Quad)부문은 국제휠체어럭비연맹에서 규정한 등급분류와 장애인럭비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출전 가능하다.

② 오픈(Open) 부문은 퀴드부문과 퀴드외의 모든 지체장애인등급에 있어 장애인럭비협회에서 규정한 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등급이 적용 되면 출전 가능하다.

③ 어울림 부문 : 대회 활성화 및 비장애인의 참여와 관심을 위하여 대회기간중에 별도로 어울림부를 개최 할수 있으며, 코트내의 선수구성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④ 기타 세부종목 유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대회 참가요강 배포 전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 5 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13조 (경기운영)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의 모든 경기는 장애인력비협회의 경기규칙과 국제연맹의 경기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공·승인) ① 정관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의 경기장 및 제반사항에 의하여 공·승인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공·승인의 기한은 제6조에 의하여 종료된다.

제15조 (경기운영방법) ① 전국대회의 경기방법은 장애인력비협회의 경기운영방식에 의하되, 대진방법과 운영은 대회실정에 맞춰서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력비협회의 회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전국체전의 경우 참가시도의 제한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예선전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일정 및 대진추첨) ① 경기일정은 참가팀에 의해 장애인력비협회에서 결정하며 운영한다. 단 전국체전은 장애인체육회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
② 대진은 각 시·도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력비협회가 결정하며 운영한다.

제17조 (지위변동) ①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 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는 즉시 실격으로 하고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이미 종료되었다면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18조 (도핑검사) ① 국내대회 및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경기장내에는 반드시 도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 (경기장 규격) ①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의 경기장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장애인력비협회는 경기장의 안전상 문제로 경기장의 공·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편의 시설의 유무
2. 경기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3.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관람객의 수용 여부
4. 장애인 접근성의 편리 여부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등)
5. 기타 경기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사항

제20조 (시설 및 경기 용기구 등) ①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의 시설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실
2. 장비보관실
3. 워밍업실
4. 심판실
5. 등급분류실
6. 각종 회의실
7. 장비매니저실
8. 봉사자실
9. 임원실
10. 기타 경기운영부실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참가팀 수에 맞춘다.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기장과 별도로 둔다.
- ④ 제1항 제5호의 경우 참가 패널수에 맞춘다.
- ⑤ 제1항 제10호의 경우 대회 규모에 맞춰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⑥ 대회관련 경기 용기구는 별표-3과 같으며,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에 적용한다.

제21조 (대회 규모별 운영) 장애인력비협회에서는 대회 규모에 맞춰 별표-4와 같이 대회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의 승인에 의한다.

제22조 (경기장 출입 신분증)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대회임원 및 경기임원, 참가선수단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한다.

- ② 위원회는 대회준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신분증의 견본을 장애인력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등급분류) ①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선수 및 체육동호인의 경우 등급분류를 실시한다.

- ② 등록규정에 등록된 매년 신규 및 재등록 선수 및 체육동호인은 해당년도 4월 첫째 주에 등급분류를 실시한다.
- ③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신규선수의 경우 대진 추첨 전까지 등록 및 등급분류를 마무리 한다.

제 6 장 소청 및 처리

제24조 (소청심의위원회)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장애인력비협회 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제25조 (등급분류 소청) ① 전국대회 개최 시 등급분류 소청을 할 수가 있으며 대회전에

소청의뢰서를 소청비와 함께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제출한다.

② 전국체전의 경우 등급소청은 대진추첨 전까지 실시하며, 등급변경 및 적용은 다음 전국대회부터 적용된다.

③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국제등급을 받은 선수는 그 즉시 국제등급이 적용되나, 전국 체전 대진추첨 후는 2항에 의하여 차기 전국대회부터 적용된다.

제26조(판전 재심) ①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승인된 대회에서 판정에 대한 사항은 휠체어 럭비 경기운영 규정(국제연맹에서 발간한 국제경기규정집)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

② 판정에 대한 재심은 소청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장애인력비협회에 최종 보고 한다.

제 7 장 전국 대회

제27조 (목적) ① 국내대회 유치는 시·도장애인력비협회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시·도장애인력비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대회 유치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28조 (권한) ① 전국대회 유치는 반드시 장애인력비협회 정식 가맹단체이어야만 한다.

② 선수권대회 출전권 및 등급분류 승인대회는 반드시 장애인력비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승인절차) ① 제27조에 의하여 전국대회 개최를 원하는 시·도장애인력비협회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애인력비협회에 제출한다.

② 계획서 마감일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정한 날짜로 한다.

③ 대회 유치 등록과 함께 대회 유치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별표-5와 같이 장애인력비협회로 제출한다.

④ 대회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회 홍보물등에 장애인력비협회의 로고등을 기입하여 제작 가능하다.

제30조 (대회진행) ① 제29조에 의하여 승인된 대회는 장애인력비협회와의 기본적인 예산협의 및 업무 협약 후 대회진행을 한다.

② 승인된 대회의 경우 참가팀에 한하여 참가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결과보고) 대회 종료 20일 내에 반드시 장애인력비협회로 결과 보고 및 예산 사용 결산부분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회 취소) 29조에 의하여 승인된 전국대회의 경우 재정의 악화,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렵다고 판정될 경우 대회를 취소할수 있으며, 유치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3조 (대회제재) 29조에 의하여 대회 승인절차를 거쳐 국내대회를 유치하였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리단체의 지정등에 의하여 대회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대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직접 진행할수도 있다.

제 8 장 대회운영

제34조 (등록) 전국대회인 경우 대회모집 요강을 개최일 최소 3개월 전까지 장애인력비협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장애인력비협회와 의논 후 정한 기한내에 선수(팀)등록을 받아야 한다. 선수(팀)등록을 할 경우 소정의 참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등록마감) 위원회에서는 대회 등록에 대한 기한을 정해야 하며 마감날짜는 최소 2주전에 마감되어야 한다.

제36조 (대회의 취소) 대회가 취소 될 경우 참가비등은 환불 해줘야 하며, 자연재해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유치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37조 (임원등록) 각 팀(선수)은 다음의 임원등록이 가능하며 월체어력비 경기규정에 의해 한팀당 최대 12명의 선수 신청이 가능하다.

- | | |
|---------|-------|
| 1. 감독 | 1인 |
| 2. 코치 | 1인 이상 |
| 3. 트레이너 | 1인 이상 |
| 4. 장비관리 | 약간인 |
| 5. 의무관리 | 약간인 |
| 6. 팀스텝 | 약간인 |

제38조 (대표자 회의) 공식 전국대회인 경우 감독자회의에서 중요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각 시도대표 혹은 팀의 대표들은 반드시 감독자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력비협회의 경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제 9 장 의 전

제39조 (의전순) ① 승인 된 휠체어럭비 경기에서는 장애인럭비협회 회장 혹은 회장을 대신한 대리인이 상석에 착석하며 다음순위는 위원회 임원순으로 한다.

② 기타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장애인럭비협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0조 (개회식) ① 개회식의 순서는 개최지의 특성에 고려하여 진행하되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대표자가 환영사를 하고 장애인럭비협회의 회장 혹은 대리인을 소개한다.
2. 장애인럭비협회 회장 혹은 대리인은 개막을 공표하기 위한 간단한 개회사를 진행한다.
3. 참석하는 선수와 심판들의 선서를 진행한다.

②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장애인럭비협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1조 (폐회식) ① 승인 된 모든 전국휠체어럭비대회에서는 시상식과 폐회식을 진행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팀별 순위시상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하되 반드시 장애인럭비협회와 상의한다.
 2. 메달, 트로피등에는 반드시 장애인럭비협회 로고, 마크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 ②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장애인럭비협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2조 (국제교류 대회) 국내대회 운영 시 국제교류 초청대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장애인럭비협회와 협의 후에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다.

부칙 (2011. 3. 2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3.26)

부칙 (2012. 2. 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2.25)

부칙 (2013. 3. 2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3.27)

부칙 (2015. 4. 3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4. 30)

부칙 (2017. 2. 24)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2. 24)

부칙 (2020. 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2.20.)

< 별표-1 > 어울림부 선수구성

코트 내 선수구성

- 가. 오픈부 선수와 비장애인 중 2명
- 나. 비장애 여성과 퀴드선수 중 2명

※ 코트내의 선수는 반드시 가항 2명, 나항 2명으로 총4명이 구성되어야 한다.

< 별표-2 > 경기장 규격

구분	내용
코트 1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코트 최소의 크기는 36m X 22m이상이어야 한다. 나. 휠체어 보관소 및 임원 대기실이 배정되어야 한다. 다. 도핑 검사실 및 응급의료 시설이 있어야 한다. 라. 경기장 진입로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 천정의 높이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한다. 바. 음향은 경기장내 잡음이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조명의 밝기는 IWRF에서 지향하는 밝기가 되어야 한다.
코트 2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코트 최소의 길이가 36m X 48m이상이어야 한다 나. 코트한개의 나항에서 사항을 포함한다.

<별표-3> 대회 용기구 현황

가. 대회 용기구 현황

연번	품명	규격 (제조사)	단위	수량	비고
1	핸드볼왁스 (송진)	(Moltern)	box	5Box	
2	선수용 장갑	(grip)	box	2Box	
3	테이핑	(Mueller)	box	5Box	
4	휠체어타이어튜브	24" 25"	ea	100개	
5	경기용휠체어타이어	24" 25"	ea	50개	
6	휠체어럭비공	(Moltern)	ea	20개	
7	삼각콘(원뿔)	30cm ~ 50cm	ea	12개	
8	휘슬(심판용)	불없는 휘슬(Fox)	ea	10개	
9	에어펌프(자동)	220V	ea	2	
10	에어펌프(수동)		ea	4	
11	분무기	200ML이상	ea	20개	
12	구급함(구급약포함)	구급약 포함	ea	2개	
13	라인테이프(경기장 셋팅용)	폭 5cm 화이트(3M)	box	1Box	
14	줄자	50M	ea	2개	
15	경기장 바닥 유포필름공사	8mX1.75m	ea	4개	
16	스톱워치	일반용	ea	10개	
17	공구함(공구포함)	공구포함	Box	2Box	
18	40's 전광판	40초 전광판 (OP)	ea	6개	무선
19	선수교체 피켓 (영문)	50cm X 20cm	ea	2개	
20	작전타임 피켓 (영문)	50cm X 20cm	ea	2개	
21	선수단 피켓	80cmX30cm	ea	20개	
22	공격표시 화살표	50cm X 20cm	ea	2개	
23	경고카드(Yellow)	10cmX20cm	ea	2개	
24	경고카드(Red)	10cmX20cm	ea	2개	
25	메인 전광판	럭비 700 (OP)	ea	6개	무선
26	전선릴(50M)		ea	10개	
27	냉동고		ea	1개	
28	럭비용 휠체어	럭비용	ea	8개	
29	펜스	럭비용 펜스	ea	100개	

나. 전광판 사양

구 분	내 용	수 량
메인전광판	가. 8분, 2분, 5분, 3분 시간 세팅 나. 30초, 60초 타임아웃 다. '가'항 종료 후 부저음 라. '나'항 종료 후 부저음 마. '나'항 세팅 시 부저음 제외 바. 스코어 1점씩 사. 경고부저 '다', '라', 'C'항과의 별도 부저음 아. 피리어드 자. '나'항 설정 시 그림의 동그라미 한 개씩 - 30초 레드 - 60초 그린	크기동일 2개 지지대 필요 무선
40초 전광판	a. 메인전광판과 가항의 시간과 호환 b. 40초, 15초 시간 세팅 c. 'b'항 종료 후 '가', '나'항과의 별도 음향	크기동일 2개 지지대 필요 무선

<별표-4> 휠체어럭비 대회 규모별 현황

가. 국내대회별 규모 현황

구분	Type A	Type B		Type C	
		B1	B2	C1	C2
명칭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지역대회	
코트수	2면 이상	1면	2면 이상	1면	2면 이상
유치비	2,000천원	2,000천원		-	
참가팀	16팀 이상	10팀 이상		8팀 이하	
운영위원장	1인 (장애인럭비협회 임직원)				
기술위원장	1인 (장애인럭비협회 임직원)				
종목담당관	1인 (개최지 임직원)				
심판위원장	1인 (장애인럭비협회 심판이사)				
등급위원장	1인 (장애인럭비협회 등급분류 이사)			요청시	
소청위원	3인이상 (장애인럭비협회 임직원)			-	
심판	16명	12명	16명	8~10명	12~14명
기록심	24명	16명	22명	10~12명	14~16명
등급분류사	6명	4명		4명 이내	
장비안전	6명	4명		4명 이내	
운영요원	20명 이상	20명 내외		10명~20명 내외	
봉사자	50명 이상	50명 내외		30명 내외	
등급분류	인증			요청시 (인증료 500천원)	
심판	인증			요청시 (인증료 500천원)	
소청	인증			-	
참가비	100,000원 / 팀당			-	
예산	50,000천원 이상		30,000천원~50,000천원		-
부실	심판실 (위원장실 및 집기류 별도, 샤워시설) 등급분류실 (2실, 위원장 및 집기류 별도) 도핑운영실 (화장실 운영) 협회장실 (집기류 별도) VIP실 (집기류 별도) 기술위원장실 (집기류 별도, 종목담당관, 운영위원장) 마사지실 (집기류 별도) 휠체어 보관실 (팀별에 맞게 보안가능) 기타운영실			심판실 운영본부 기술위원장실 휠체어보관실 기타운영실	
신청기간	12개월 전 신청		6개월 전 신청		3개월 전 신청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공승인비

코트 수	공승인비
1	5,000,000원
2	10,000,000원